

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

의안 번호	55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5. 3 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1. 제안이유

저소득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 지원하고 있는 2000년 저소득세입자의 전세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향후 융자금의 결손을 보존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손실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파주시와 한국주택은행 금촌지점과의 협약을 체결하고 그 채무를 보증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2000년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지원액 443,000천원에 대한 채무를 파주시에서 보증

2000년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보증채무

가. 목 적

- 도시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
코져 함.

나. 지원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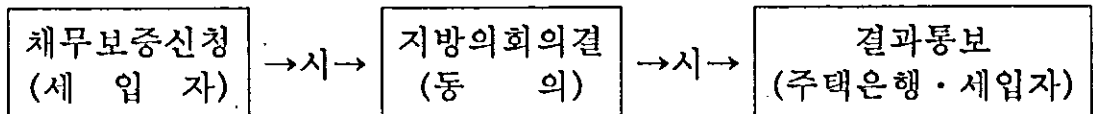
- 파주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세입자중 전세자금 2,000만원 이하인
전세입자
- 가구당 지원액 : 1,000만원 한도내
- 대출금리 : 년리 3%(본인부담)
- 상환조건 : 2년 이내 정기상환(전세 재계약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)
- 자금관리 : 주택은행에서 특별계정설치 관리

다. 융자실시 방법

- 융자업무 취급기관 : 한국주택은행 금촌지점
- 융자계약 체결
 - 계약당사자 : 지원대상 세대주와 한국주택은행 금촌지점
 - 보 증 인 : 가옥주의 보증을 받아야 함.
 - 채무이행에 대한 기관보증 :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총체적 보증

라. 채무이행 보증절차

- 근거규정 :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



- 채무보증 내용

-전세자금 융자금 상환의 장기간 연체로 부득이 지방자치단체의 결손
보존 문제가 발생할 경우

마. 기타사항

- 가옥주는 전세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전세 금액 중 용자금분을 관할 읍·면·동장에게 반환하고, 읍·면·동장은 주택은행에 즉시 상환하며
- 읍·면·동장은 채무자에 대하여 분기 1회이상 용자금 및 이자납입 상환 실태, 주거실태등을 정기적으로 파악 관리함

□ 참고사항

- 가. 저소득전세입자 보증금 용자지원 협약서안
- 나. 전세자금융자 신청자 명단
- 다. 지방자치법 제115조(지방채무및채권관리)
- 라. 지방재정법 제10조(보증채무부담행위)
- 마.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(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)

소 관 실 · 과 · 소		건축과 ☎ 940-4406
제 출 자	건 축 과 장	여 성 구
	공동주택담당	송 종 완
	담 당 자	주 재 규

저소득 전세임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서안

파주시장(이하"갑"이라 한다)과 한국주택은행 금촌지점장(이하"을"이라 한다)은 "갑"의 추천에 의하여 파주시거주 저소득 전세임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을 "을"이 융자함에 있어 필요한 다음 사항을 협약한다.

제1조 (계정설치 및 융자한도)

- ① 전세자금 융자지원을 위하여 "을"이 차입한 자금은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한다.
- ② "갑"의 추천에 의거 "을"이 융자할 수 있는 한도는 경기도로부터 "갑"에 게 배정된 금액 이내로 한다

제2조 (융자대상 선정등)

융자대상자 선정기준은 건설교통부지침에 의하여 "갑"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, "갑"은 융자대상자(기한연장 및 재대출 포함)를 선정하여 추천한다.

제3조 (융자한도 및 이율)

융자한도 및 이율은 매년도 건설교통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 (상환기간)

융자금은 2년만기 일시상환으로 한다. 다만, 전세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할 수 있다.

제5조 (용자등)

- ① "갑"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선정된 용자대상자로 하여금 "을" 또는 "을"이 지정하는 점포에서 용자받도록 조치한다.
- ② "을"은 용자시 가옥주의 보증을 받도록 한다.
- ③ "갑"이 선정한 용자대상자에게 용자 취급하는 기간은 당해년도 말까지 하되 익년도로 이월하여 취급할 수 있다.

제6조 (용자금 반환의 특약등)

- ① "을"은 용자서류 접수시 첨부된 전세 계약서상에 "가옥주가 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할 때에는 전세금 중 용자금은 관할 읍·면·동장에게 반환한다"는 특약사항이 명기되고 가옥주·세입자 및 관할 읍·면·동장이 연기명으로 계약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② "갑"은 제1항의 특약에 따라 가옥주로부터 용자금을 반환받아야 하며, "갑"은 즉시 "을"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 단, 용자받은 세입자가 용자기간 만기 도래 전에 관할 행정구역내로 전출을 연대보증인이 동의하는 경우(보증인 교체 포함)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이 경우 "갑"은 용자받은 세입자의 전입지 관할 읍·면·동장이 연기명한 전세계약서를 첨부한 명단을 "을"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의하여 납부할 용자금의 범위는 "을"의 용자원금에 용자금 납부 기일까지의 이자 및 연체이자를 포함한다.

제7조 (사후관리)

- ① "갑"과 "을"은 용자금의 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용자취급 및 사후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며 상호 협조한다.
- ② "을"을 매월 읍·면·동별 연체자 명단과 원리금 연체현황을 "갑"에게 통보하며, "갑"은 연체자의 주거실태와 원리금 상환계획등을 파악하여 "을"에게 통보한다.

- ③ “을”은 융자원금 또는 이자납입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(이하“채무관계자”라 한다)에게 독촉장 발송 및 이행독촉등의 사후관리 업무를 하여야 한다.
- ④ “을”은 “갑”으로부터 융자금 현황에 대한 자료제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8조 (손실보전)

- ① “갑”은 제1조 제2항의 융자한도 범위내의 “을”의 융자원금, 이자 및 연체이자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대급금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.
- ② “을”은 채무관계자에게 융자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을 촉구한 후에도 계속하여 6개월이상 불이행될 때에는 “을”의 직원이 채무관계자를 심방하여 이행독촉하고, 이러한 사항을 “갑”에게 통지한다.
- ③ 이행독촉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융자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계정의 결손으로 간주하여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이를 보전한다.
- ④ “갑”이 손실보전할 금액은 “갑”이 실제 보전하는 날까지 발생한 융자원금, 이자 및 연체이자를 포함한다.
- ⑤ “을”이 손실을 보전받고자 할 때에는 “갑”에게 제3항의 금액에 대하여 매분기 말일까지 결손보전을 청구하여야 하며, “갑”은 “을”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청구일이 속한 분기의 익월 말일까지 그 결손을 보전하여야 한다.
- ⑥ 제5항의 결손보전 후 “갑”은 “을”과 강제집행 절차 진행여부에 대한 협의를 거쳐 “을”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, “을”의 명의로 “갑”의 비용부담과 책임하에 보전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집행할 수 있다.
- ⑦ “을”은 “갑”으로부터 결손보전이 있는 후에도 “갑”의 강제집행절차 진행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한다.
- ⑧ “갑”은 손실보전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.

제9조 (기 타)

- ① 본 협약은 주요내용의 변동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 연장한 것으로 한다.
- ② 본 협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 및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“갑”과 “을”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
- ③ 기타 용자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“을”의 내규 및 금융관행을 준용한다.

본 협약체결을 입증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“갑”과 “을”이 협약서 2통을 작성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2000.

(갑) 파 주 시 장 (인)

(을) 한국주택은행 금촌지점장 (인)

전세자금 융자금 신청자 현황

대상자

번호	신청지	성명	주민등록번호	주 소	융자신청액 (만원)	비 고
1	문산	전영식	590605-1105516	문산읍 문산4리 17	1,000	
2	문산	전인섭	280222-1105511	문산읍 문산4리 17	1,000	
3	문산	한도현	450405-1232827	문산읍 선유리 418 주공A 101-101	1,000	
4	문산	윤태환	580115-1232831	문산읍 선유리 418 주공A 107-403	1,000	
5	문산	박귀홍	460723-1232817	문산읍 당동리 산38-1 초원빌라 2-303	1,000	
6	문산	김태명	621121-1030311	문산읍 이천리 442-3	1,000	
7	문산	김종해	611120-2540331	문산읍 선유리 950-66	1,000	
8	문산	유치홍	470810-1056218	문산읍 선유2리 산73-1	1,000	
9	문산	김태연	400307-1651119	문산읍 문산리 17-317	1,000	
10	문산	윤석우	390720-1237613	문산읍 문산리 17-317	1,000	
11	파주	김영이	630315-2047314	파주읍 파주리 448-5	1,000	
12	파주	심정순	520411-2233519	파주읍 연풍리 296-38	1,000	
13	파주	최정길	440501-1233513	파주읍 연풍리 315-2	1,000	
14	파주	원희철	540525-1233521	파주읍 연풍리 315-3	1,000	
15	파주	장재건	670103-2233510	파주읍 연풍리 286	1,000	
16	파주	안성업	380116-1037617	파주읍 백석리 141-3	500	
17	파주	지용석	600924-1233512	파주읍 봉암리 362	1,000	
18	법원	박상철	470129-1233623	법원읍 동문리 540	700	
19	윳룡	김영기	320813-1581115	문산읍 문산리 17-317	1,000	
20	탄현	노춘래	580217-1233121	탄현면 대동리 244-7	800	
21	탄현	김영관	570115-1024612	탄현면 갈현리 329-1	1,000	
22	교하	최영해	660921-2026021	교하면 야당리 산9-1	800	
23	교하	여영옥	600901-2520339	교하면 야당리 291-19	1,000	
24	교하	정국남	610817-1162222	교하면 야당리 291-19	1,000	
25	교하	방창언	670210-1233111	교하면 야당리 37-27	1,000	
26	조리	문승래	601218-2466513	조리면 봉일천리 204-15	1,000	
27	광탄	장재영	690420-1029315	광탄면 발랑리 382-12	1,000	
28	광탄	김신규	690228-1233215	광탄면 문수리 473-2	1,000	
29	적성	권미옥	630310-2816826	적성면 마지리 44-30	1,000	
30	금촌1	최숙정	640812-2064029	금촌동 418-3	1,000	
31	금촌1	함종선	680605-1233225	금촌동 산7	1,000	
32	금촌1	남철우	470710-1233218	금촌동 50-13	1,000	
33	금촌1	송수민	690120-1233211	금촌동 395	1,000	
34	금촌1	노관래	711010-1233111	아동동 189	1,000	
35	금촌1	문경숙	600120-2046631	금촌동 424-41 경신아파트 104-504	1,000	
36	금촌1	이요한	660110-1232911	아동동 294-4 무궁화아파트 가-311	1,000	
37	금촌2	박영민	650513-2068621	금촌동 619-3	1,000	
38	금촌2	이순량	340305-2233212	금촌동 78-16	1,000	
39	금촌2	이순희	501113-2011710	금촌동 306	1,000	
40	금촌2	김일권	640403-1235111	금촌동 341	1,000	
계					38,800	

비대상자

1	문산	박수만	560807-1232816	문산읍 문산리 17	1,000	주택소유
2	교하	하미진	660917-2235114	교하면 야당리 29	1,000	토지소유
3	금촌1	남수	480804-1233211	아동동 46-29	1,000	토지소유
4	금촌1	박종갑	370514-1233213	검산동 308	1,000	토지소유
5	금촌2	방군옥	621120-2813011	금촌동 307-106	1,000	납편토지소유
6	금촌2	이형재	590904-1630313	금촌동 765-12	1,000	2000만원초과
7	금촌2	정재숙	400123-2233324	금촌동 334-188	1,000	토지소유
계					7,000	